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상호)

이 회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K Broadband Co., Ltd. 라 표기한다. <개정 1998. 8. 28., 2004. 12. 16., 2008. 9. 22.>

제2조 (목적)

① 이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4. 3. 26., 2009. 3. 13.>

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 <개정 2009. 3. 13., 2010. 3. 12., 2014. 3. 21., 2019. 3. 27, 2020. 5. 6., 2021. 3. 26.>

1. 정보통신사업
2.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
3. 콘텐츠사업
4. 통신판매업
5. 광고업
6. 전자금융업
7. 단말기매매 및 임대업
8. 동산 및 부동산 임대업
9. 정보통신공사업 및 임대업
10. 상품권의 발행, 관리 및 유통판매업
11. 전기공사업 <신설 2014. 3. 21.>
12.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업 <신설 2014. 3. 21.>
13. 기계경비업 <신설 2019. 3. 27.>
14.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
15.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
16.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제조 및 유통업

17. 제1호 내지 제7호 관련 대행 및 위수탁업
18. 관계통신법령에서 수행토록 규정된 사업
19. 종합유선방송사업
20. 전송망사업
21. 기간통신사업
22.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문화, 관광사업
23. 문화사업, 공익사업 및 정부공시사항 전달
24. 전시, 세미나 컨벤션사업
25. 독립영상제작사업
26. 경영자문업
27. 공연, 전시, 행사기획 및 대행업
28. 서버, 가전제품, 사무기기 관련 판매 및 임대업
29.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통합관리업
30.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
31.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
32. 부가통신사업 <신설 2021. 3. 26>
33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<신설 2021. 3. 26>
34. 통신과금서비스 사업 <신설 2021. 3. 26>
35.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<신설 2021. 3. 26>
36. 위 각호의 사업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대되는 제사업

③ 이 회사는 제2항 각호의 사업이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.

제3조 (본사 및 지사)

①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② 이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광고방법)

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skbbroadband.com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"서울신문"(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으로 한다. 이하

같다.)에 게재한다. <개정 1999. 10. 1., 2006. 3. 24., 2014. 3. 21.